

第13回서울特別市議會(定期會)

# 運營委員會會議錄

第 1 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 時：1995年11月20日(月) 午後2時  
場 所：運營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議事日程協議의件
  2. 서울特別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 關한條例案

- 審査된案件
1. 議事日程協議의件 ..... 1面
  2. 서울特別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 關한條例案(吳廣烈議員 外 1人 發議) ..... 2面

(14時 29分 開議)

○委員長 金洙福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3回 定期會 第1次 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 議事日程協議의件  
○委員長 金洙福 議事日程 第1項 第13回 서울特別市議會 定期會 議事日程 協議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서울特別市議會會議規則 第11條 및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議長으로부터 第13回 定期會 議事日程에 對한 協議要請이 있었습니다.  
參考로 이번 定期會의 主要日程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地方自治法 第41條第2項의 規

定에 따라 會期는 11月 20일부터 12月 27日까지 38日間으로, 이 期間 中 11月 21일부터 11月 29日까지 9日間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하고, 11月 30일부터 12月 2日까지 3日間 市政質問이 있겠으며, 12月 3일부터 16日까지 14日間 96年度 豫算案을 常任委의 豫備審査와 豫決特委의 綜合審査를 거쳐 本會議에서 확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議事日程案을 참고하여 주시고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 照)

運 營 委 員 會 議 事 日 程 案  
【제13회 정기회 '95.11.20(월)~12.27(월), 38일간】

本 會 議		運 營 委 員 會	
日 時	附 議 案 件	日 時	附 議 案 件
11.20(월) 15:00	※개회식 1. 제1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1.20(월) 14:00	1.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안

2 (第13回一運營第1次)

本 會 議		運 營 委 員 會	
日 時	附 議 案 件	日 時	附 議 案 件
	4.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서울특별시 자금운용실태와 서울특별시 금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휴회결의(9일간) : 11.21 ~11.29		
11.21(화) ~ 11.29(수)	1. 행정사무감사(9일간)	11.25(토) 10:00	1.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처)
11.30(목) ~ 12. 2(토) 10:00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3일간) ※본회의 휴회결의(13일간) : 12.3 ~12.15		
12. 3(일) ~ 12.15(금)	1.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13일간)	12. 7(목) 10:00	1.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회사무처소관) 2. 19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회사무처소관)
12.16(토) 10:00	1. 1996년도 서울특별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처리 ※본회의 휴회결의(9일간) : 12.17 ~12.25		
12.17(일) ~ 12.25(월)	1. 상임위원회 안전심사(9일간)	12.22(금) 09:30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소관)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괄)
12.26(화) ~27(수) 15:00	1. 본회의 안전처리(2일간)		
<p>2. 서울特別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 條例案(吳廣烈議員 外 1人 發議) (14時 31分) ○委員長 金洙福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 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委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年 7月 1日 改正公布된 地方自治法施行令이 94年 3月 16日 與野  합의로 改正된 地</p>		<p>方自治法 第32條의 立法趣旨에 어긋나서 그동안 全國 市·道議會 議長協議會 4回와 運營委員長協議會 4回 등 總 8回의 會議를 개최하여 우리 廣域議員의 懸案問題인 議員補佐官制 도입을 위한 請願書를 野3黨 총무의 소개를 받아 國會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國家事務의 地方移讓促求建議案을 關係機關에 제출하는 등 議員 권익신장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議政活動費와 會議手當 등의 支給問題는 全國 15個 市·道議會 中 서울을 포함한 3個 市·道議</p>	